


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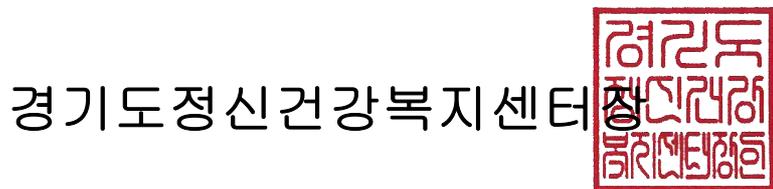
수신자 수신처 참고

(경 유)

제 목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불임과 같이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사 업 명 : 2021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
 - 나. 교육기간 : 2021.06. ~ 2021.11.(기간 내 희망일 신청)
 - 다. 교육대상 : 도 내 정신의료기관 5개 기관
 - 라. 교 육 비 : 832,000원(3인 강사비)
 - 마. 신청기간 : 2021.05.10.(월) ~ 마감 시까지(선착순 모집)
 - 바.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(gpmhc@hanmail.net)
 - 사. 문 의 : 회복지원팀 설은실(031-212-0435, 내선 6427)

- 불임 1.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1부
 2.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 1부. 끝.



수신처 : 도 내 31개 시·군 정신의료기관

담당 설은실	팀장 정미연	부센터장 윤미경	센터장 이명수
시행: 경기정신건강21-285(2021.05.07.)		접수:	
우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		전화: (031)212-0435	전송: (031)212-0442
(정자동) 경기도 의료원 2층		(내선6427)	
홈페이지 http://www.mentalhealth.or.kr		전자우편 gpmhc@hanmail.net	

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

□ 추진 목적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(인권교육), 동법 시행규칙 제50조(인권교육)에 따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
-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·운영자(이하 “운영자”)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

□ 교육 안내

- 교육 기간 : 2021.06. ~ 2021.11. (기간 내 희망일 신청)
- 교육 방법 : 방문교육
- 교육 대상 : 도 내 정신의료기관 5개 기관
- 교육 내용
 - 2021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(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 기준에 따른 교육 실시, 총 4시간

구분	교육내용
인권알기	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인권의 이해: 인권의 개념, 역사, 인권의 종류 등•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: 국가인권위원회, 장애인차별금지법, 인신보호법, 세계인권선언, MI원칙¹⁾, 장애인권리협약 등•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
인권사례	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•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 보호 사례•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
인권실천	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보호 제도 해설 - 환자의 기본권, 입·퇴원 절차, 격리/강박, 작업치료, 비밀보장,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•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등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·복합적 교육•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등

* 강사에 따라 교육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.

○ 교육신청 안내

- 신청방법 : ※신청서 발송 전 유선 통화 후 이메일 제출
 - ① ‘인권교육 참가 신청서’ 작성 및 이메일 제출(gpmhc@hanmail.net)
 - ② 접수 및 교육일정 확인 ※이메일 제출 후 교육 확정 시 유선통보
 - ③ 교육비 입금
- 신청일시 : 2021.05.10.(월) 09:00 ~ 마감 시까지 ※선착순 모집
- 입금계좌 : 농협 301-0082-0605-91 (예금주 :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)
- 교육비 : 832,000원(3인, 총 4시간)
- 강사구성 : 인권강사(정신건강전문요원), 인권강사(가족), 당사자 강사
- 유의사항
 - 인권교육 이수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.
 - 참가비는 강사비로 전액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.
 - 자료집 제작 및 다과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 - 현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.
 - 교육 일주일 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 -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 의 : 회복지원팀 설은실 031-212-0435(내선 6427)